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2023. 2. .

국 토 교 통 부

(녹색도시과)

도시 ·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1-8 (2)을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1-1-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한다.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에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1-1-8.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1)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생 략)	(3) (현행 (2)와 같음)